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1. 27 선고 2021가단2069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16.

판 결 선 고 2022. 1. 27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4. 30. 체결된 증여 약정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. 4. 30. 접수 제33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(주)D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하던 중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4. 9. 12.경 원금 1,765,000원, 이자 2,070,070원 합계 3,835,07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나. (주)D은 2004. 6. 30. (주)E에게, (주)E는 2007. 6. 30. (주)F[변경전 상호 (주)G]에게, (주)F는 2012. 10. 1. H(유)에게, H(유)는 2014. 9. 12. I 유한회사에게 각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수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다. I 유한회사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1545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5. 3. 6. ‘C은 I 유한회사에게 3,835,070원과 그 중 1,765,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’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. 위 지급명령은 2015. 3. 11. C에게 송달되어 2015. 3. 26. 확정되었다.

라. 원고는 I 유한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, 2021. 3. 23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주사보 J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.

마. 한편,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. 4. 30.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2/11 지분을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 한다)하고,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/11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오윤경

별지

부동산 목록

1.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 271.7㎡2. 부산광역시 기장군 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기장군

목조 시멘트기와지붕

단층주택

60.34㎡

(여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동기와 관할 / 공유자 지분 중 2/11지분)

